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3輯(2002)

2000 베트남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 원 석**

<목 차>

- I. 서 론
- II. 1987년 이후의 투자상황
- III. 투자의 형태(Forms of Investment)
- IV. 외국인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 V. 결 론

I. 서 론

세계 제4위의 석유매장량과 석탄,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민1인당 200달러미만의 빈곤한 국가이자 아시

*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라 하고, 국내투자가가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해외투자(overseas investment)라고 한다.

직접투자란 외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이 투자사업에 대한 경영지배나 경영참여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이 반하여 경영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이자나 이익배당 등 자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 투자라고 한다. 보통 투자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투자라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portfolio 투자라고 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2 比較法學 (第 13 輯)

아에서 마지막 남은 투자의 미개척지로 남아 있었다.¹⁾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1975년 공산화이후 미국에 의해 취해진 금수조치, 실패한 계획경제, 그리고 특히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구소련 경제의 몰락과 경제원조의 감소 때문이다.²⁾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1986년 “도이모이(doi moi: 개혁 또는 혁신)”라는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도이모이” 경제개혁의 주요한 특징은 집단농장제도의 해체와 개인으로의 토지반환, 가격통제의 철폐, 민간부분의 촉진, 화폐의 평가절하, 군대감소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삭감,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이자율조정,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유인이다.³⁾ “도이모이”는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87년 동남아시아국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외국인투자규범으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인투자법은 1990년, 1992년의 정부조직법(Law on th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1996년의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그리고 2000년의 외국인투자법의 수정 및 수정에 관한 법

1) Camellia Ngo,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Thailand as a Model for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16 Hasting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67, 77 (1992). 베트남에는 약 15억~30억 배럴의 석유, 수억 톤의 석탄, 8개의 대형 금광이 있다. 이 외에 베트남은 다양한 중요 광물, 넓은 숲과 농지, 수력발전을 상당한 잠재력, 수산업과 항구를 위한 긴 해안선, 값싸고 높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Id. at 78.

2) 자세한 내용은 Magali Matarazzi, Comment, *Selecting a Corporate For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s Oil and Gas Industry under the 1995 Land Law*, 19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364, 366-368 (1999); James Taylor, Jr., *Vietnam: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for U.S. Investors*, 25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469, 470-472 (1994); 권재열, “베트남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적 환경,” 비교사법 제3권(한국비교사법연구회, 1996. 6) 201-206면.

3) Taylor, *supra* note 2, at 469.

(Law on Amendments of and Additions to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에 의해 개정되었고, 1993년 외국인투자법시행령(Decree of the Government No. 18-CP Regulating Detailed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1998년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Decree No. 10/CP on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1999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의결(Decision No. 53/QD-TTg on Investment Priorities), 그리고 2000년의 외국인투자활동에 관한 지시령(Circular Providing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과 외국인투자법시행령(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에 의해 보충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계속하여 하락하여왔다. 예를 들어, 1996년에는 86억 달러이던 외국인투자가 1997년에는 46억 5천만 달러, 1998년에는 약39억 달러, 1999년 14억 달러, 그리고 2000년에는 7월까지 겨우 6억 9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1997-1998년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외환위기에 기인하지만 베트남외국인투자법의 제도적 결함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베트남정부는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법과 그 시행령을 보완 또는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2000년 5월의 외국인투자법과 2000년 7월의 시행령이다.

2000외국인투자법의 주요 개정분야는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베트남인이 자본투자의 수단으로 토지사용권을 투자한 경우에 토지정화(land clearance) 및 배상에 대한 주책임이 외국인투자가에서 베트남 투자가로 전환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그 위험을 감소시켰다.⁴⁾ 또한, 외국인투자가가 토지사용권을 담보하여 금융기관으

4) 2000외국인투자법 제46조 제2항.

4 比較法學 (第 13 輯)

로부터 금전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화보유 규제를 완화시켰다.⁵⁾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영 진의 합의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형태 변경이나 회사조직 재구성, 그리고 자본의 송금을 좀 더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가에게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수를 늘리고,⁶⁾ 투자형태와 액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이윤송금세를 각각 10%, 7%, 5%에서 7%, 5%, 3%로 인하하였으며, 외국인단독기업과 BCC외국인투자가가 손실을 그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베트남 법령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이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과 구법 중 외국인투자가에게 유리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정된 2000년 외국인투자법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외국인투자법은 전체 6장, 6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3조)은 베트남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천명, 주권의 보유, 주요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에 개방된 지역의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제2장(제4-19조)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기업의 형태, 자본출자방법, 보험, 이윤과 위험의 배분, 경영조직, 기업의 존속기간, 노동, 금융 및 회계요건, 베트남법률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제20-25)은 출자자본 및 이윤의 송금권리, 외국인기업의 수용 및 국유화금지, 그리고 분쟁해결제도 등 외국인투자보장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제26-53)은 베트남에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기업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5장(제54-64)은 외국인투자를 감독하는 외국인투자관리를 위한 국가기관(State Organ for Management of Foreign Investment)의 권리와

5) 2000외국인투자법 제46조 제3항.

6) 2000외국인투자법 제47조.

책임에 대해 상세하고 있다.

제6장(제65-68조)은 투자법의 이행에 대한 부수적 규정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외국투자유치제도의 결함이나 미비점을 분석하기보다는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이 허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 외국인투자절차 및 관련 정부기관의 권한, 이윤의 송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분쟁해결 등을 살펴본다.

II. 1987년 이후의 투자상황

1987년 이후 외국인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건수는 2,400건이 넘고, 그 투자액은 350억불이상이며, 투자국수도 70개국이 넘는다.⁷⁾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년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에는 3.6%에 불과하던 것이 1999년에는 10.5%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재 베트남 총 투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수출액의 21%, 그리고 300,000건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⁸⁾

2000년 4월 현재 외국인투자의 분포를 보면, 호치민시가 97억불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노이시가 81억불의 외국인투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억불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도시는 호치민시, 하노이, 동나이, 빈동, 꽁나이 그리고 바리아 봉타우 등 7개 도시이다.

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An Overview, 유엔베트남대표부 홈페이지 [<http://www.un.int/vietnam>].

8) Id.

III. 투자의 형태(Forms of Investment)

베트남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관할을 받고, 계획투자부는 외국인투자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계획투자부는 1996년 국가협력투자위원회(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 이하 SCCI)⁹⁾와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ttee)가 통합되면서 창설되었다. 그 권한은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투자유치관련 정책 및 법령의 초안 작성, 투자유치 관련 정부부서간 이견 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법령 시행을 위한 지침서를 지방인민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⁰⁾ 이 외에도, 계획투자부는 투자계획서 목록 작성, 투자절차지침서 마련, 투자신청서 접수 및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투자허가증 발부, 투자계획 형성 및 이행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조정기관의 역할, 외국인투자활동의 조사 및 감독 등의 기능을 행사한다.¹¹⁾

외국인투자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투자형태로 자본, 동산 그리고 기술이전을 통하여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합작기업(Joint Venture), 외국인단독기업(100% Foreign-Owned Enterprise), 그리고 건설운영양여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1.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경영협력계약은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과 베트남인간에 서면합의에 의해 설립되는 투자형태이다. 즉 이러

9) Robert L. Wunker, *The Laws of Vietnam Affecting Foreign Investment*, 28 International Lawyer 363, 365 (1994). SCCI는 1996년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 책임을졌다.

10) 2000 외국인투자법 제56조.

11) 2000 외국인투자법 제56조.

한 투자방식은 법인을 창출하지 아니한다.¹²⁾ 대신에, 경영협력계약은 투자당사자간에 계약적 관계만을 창출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와 같은 순수하게 경제적, 쌍방무역계약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경영협력계약이 되지 아니한다. 경영협력계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협력계약내용, 법적 및 재정상태, 그리고 관계의 경제적 근거에 대한 조사를 계획투자부로부터 받아야 한다.¹³⁾

외국인투자가의 세계상 그리고 금융상의 의무는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지만, 베트남당사자는 베트남 국내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¹⁴⁾

2. 합작기업(Joint Venture)¹⁵⁾

합작기업은 2인 이상의 외국인과 베트남인이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기업형태이다.¹⁶⁾ 합작기업은 경영협력계약과는 달리, 법정출자액 만큼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체를 의미한다.¹⁷⁾ 합작기업의 법정자본은 총

- 12) 2000외국인투자법의 이행에 관한 상세규칙에 관한 정부령(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 이하 2000시행령) 제6조.
- 13) 2000시행령 제7조. 이 외에 경영협력계약당사자의 이름, 주소, 대표자와 투자예정지역의 주소, 목적, 당사자의 투자비율, 이익의 배분 및 계약이행 시간표, 주요상품 및 수출입 비율, 계약기간, 당사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수정 및 종료절차, 양도조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방법이 포함되어야한다.
- 14) 2000시행령 제10조.
- 15) 합작투자사업은 국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형태를 합작자본투자라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합작투자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국내자본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100%외국소유기업보다 기술적 그리고 경영상의 노하우를 좀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외국기업이 국내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16) 합작기업은 특별한 경우에 베트남정부와 외국정부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다. 2000시행령 제11조.
- 17) 2000외국인투자법 제6조. 합작기업의 당사자는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수입과 위험을 분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0외국인투자법 제10조.

투자자본의 30%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¹⁸⁾ 그러나 기관시설이나 투자장려지역에 투자, 조림사업 및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총 법정자본금의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¹⁹⁾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합작기업의 당사자가 부보한(subscribed) 총 법정자본의 3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²⁰⁾ 그러나 업무분야(business sector), 기술, 시장, 영업결과 그리고 투자의 경제사회적 이익에 따라 투자허가기관은 외국인법정투자비율을 인하할 수 있으나 20%이하로 인하될 수는 없다.²¹⁾ 외국인투자가의 법정투자한도는 당사자간에 결정되나, 계획투자부는 50%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선호하고, 외국투자가의 출자한도에 대한 상한선은 없다.²²⁾ 베트남투자가가 법정자본투자를 토지사용권의 형태로 하는 경우 그 가치는 지역인민위원회의 토지임차료율에 따라 결정된다.²³⁾

법정투자의 방법은 합작기업의 설립 시에 일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상의 투자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투자당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에 실패하면 허가기관은 투자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²⁴⁾

18) 2000시행령 제14조 제1항.

19) Id.

20) 2000외국인투자법 제8조. 외국인의 법정투자 방식은 (a) 베트남투자로 발생한 외화나 베트남화폐, (b) 장비, 기계류, 플랜트 그리고 다른 건설장비, (c) 산업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기술적 공정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2000외국인투자법 제7조 제1항. 베트남인의 법정투자방식은 외국인의 법정투자방식 외에 토지, 차원 및 수리권이 포함된다. 2000외국인투자법 제7조 제2항.

21) 2000시행령 제14조 제2항. 베트남 정부가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합작계약의 당사자는 합작계약 체결 시 베트남당사자의 법정투자비율의 인상을 합의할 수 있다. 2000시행령 제14조 제3항.

22) 2000외국인투자법 제8조. 투자 가치는 투자시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 투자계획은 당사자간에 결정되고, 합작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법정투자로서 기계나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인증(certified)을 받아야한다. 2000외국인투자법 제9조.

23) 2000시행령 제16조.

24) 2000시행령 제15조.

합작기업의 경영은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에 의해 수행되는 데, 각 당사자는 법정자본의 자본출자비율에 따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²⁵⁾ 의장, 부의장 그리고 다른 이사회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그리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²⁶⁾ 이사의 임기는 당사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²⁷⁾ 합작기업의 투자가가 2인인 경우 각 당사자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합작기업의 투자가가 1인의 베트남인과 복수의 외국인이거나, 또는 1인의 외국인과 복수의 베트남인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최소한 두 명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²⁸⁾ 현행 합작기업이 외국인 또는 베트남인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합작기업은 이사진에 최소한 두 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중 한 명은 베트남 당사자가 선임한 베트남인이어야 한다.²⁹⁾

이사회 의장(chairman)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되나, 사장(general director) 또는 수석부사장(first deputy general director of board)은 베트남국적을 가진 자로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이사회구성원은 외국인이어도 무방하다.³⁰⁾ 의장, 사장, 수석부사장의 권한과 책임은 합작기업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사회모임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개최되어야 하고 의장이 소집하여야 하나, 긴급 모임의 경우 의장, 이사회의 2/3, 사장, 또는 수석부사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³¹⁾ 이사회의 모임에는 최소한 그 구

25) 2000외국인투자법 제11조. 합작기업은 투자허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 명부를 통지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칙 및 사장, 부사장 그리고 수석경리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00시행령 제25조 제1-2항.

26) 2000시행령 제17조.

27) 2000시행령 제17조 제2항.

28) 2000외국인투자법 제11조.

29) 2000시행령 제17조 제3항.

30) 2000외국인투자법 제12조. 사장과 수석부사장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 해임될 수 있다.

31) 2000외국인투자법 제13조.

성원 2/3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³²⁾ 정관의 변경과 이사회의장, 사장, 수석부사장의 지명 및 경질과 같이 합작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참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³³⁾

합작기업 설립당사자는 각자의 출자액에 따라 수익을 얻고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

3. 외국인단독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외국인단독기업이란 자본금 총액을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³⁴⁾ 그러나 외국인단독기업은 희귀한 광물채취나 전력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사업에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외국인단독기업은 계획투자부의 특별승인이 없는 한 총 투자자본금의 30%이상이 법정자본금이어야 하고,³⁵⁾ 최초법정자본금의 삼감은 도중에 허용되지 않는다.³⁶⁾ 출자금액, 법정자본액의 규모, 출자절차, 노사관계 및 채용조건, 존속기간 및 해산조건 등은 외국인단독기업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³⁷⁾ 투자허가기관은 정관의 내용을 조사하여, 위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결정하면 외국인단독기업의 설립허가를 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다.³⁸⁾

32) 2000외국인투자법 제13조.

33) 2000외국인투자법 제14조. 그러나 합작기업의 당사자들은 달리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정관에 합의할 수 있다.

34) 2000외국인투자법 제15조. 외국인단독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어야하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베트남기업의 자본인수와 함께 합작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단독기업도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타방은 베트남기업이어야 한다.

35) 사회기관시설과 투자장려지역에의 투자, 조림사업,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법정투자율은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 2000시행령 제23조.

36) 2000외국인투자법 제16조.

37) 2000시행령 제22조. 정관은 투자허가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 2000시행령 제23조.

38) 2000시행령 제23조 제2항.

일단 외국인단독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면, 대표는 외국인이어도 된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즉 합작기업과 외국인단독기업의 존속기한은 각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의 추천이 없는 한 5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³⁹⁾

4. 건설경영양여계약(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건설경영양여계약은 외국인투자가와 행정부서 또는 공공기관간에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발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⁴⁰⁾ 건설경영양여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한 후 베트남정부에 추가보상 없이 양여하여야 한다.

IV. 외국인투자법의 구체적 내용

1. 행정기관의 역할

1) 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계획투자부는 외국인투자사업의 형성과 이행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

39) 2000외국인투자법 제17조.

40) 2000외국인투자법 제2조. 건설경영양여계약의 다른 형태로 건설양여경영계약 (Build-Transfer-Operate Contract)이 있는데 건설경영양여계약과 다른 점은 사회가나접시설을 건설한 후 곧바로 베트남정부에 양여하고, 베트남정부는 투자자본과 합리적인 영업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다. 2000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12항.

건설경영양여계약의 또 다른 형태로 건설양여계약(Build-Transfer Contract)이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가가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정부에 양여하면, 베트남정부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자본과 영업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른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형태이다. 동법 제2조 제13항.

는 사항을 관련행정부서와 지방인민위원회 사이에서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⁴¹⁾ 주요한 기능은 권한 내의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허가서와 투자수정허가서를 발행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투자허가 및 수정 그리고 취소권한을 산업특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분쟁해결주선, 외국인투자활동의 감사 및 조사,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 및 합작계약의 조기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2) 지방인민위원회⁴²⁾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 내에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준비 또는 공시할 책임을 지고, 권한 내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허가서 발부 및 수정,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 합작계약의 조기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⁴³⁾ 또한, 계획투자부가 허가하는 사업이 관할지역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참가할 수 있다.⁴⁴⁾ 지역 내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본투자와 투자허가서 및 기타 관련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엄격히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기능으로서 토지사용권증명서 발부, 본사와 지방영업사무소의 설립허가, 외국인 주소등록, 베트남근로자 소개 등이 있다.

2. 외국인투자 허가절차(procedures for issuance of investment licenses)

베트남외국인 투자는 투자허가증(investment licences)의 발부로 승인된다. 계획투자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주무기관이다. 합작기업이나 외국인단독기업을 허가하기 전에, 계획투자부는 예정된 프로젝트의 모든 고려사항, 즉 관련산업의 성질, 법정자본금, 경영요건 및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심사한다. 계획

41) 2000시행령 제117조.

42) 2000시행령 제116조.

43) 2000시행령 제116조 제1항.

44) 2000시행령 제116조 제3항.

투자부는 (1) 합작기업의 정관, (2) 예정프로젝트를 위해 당사자가 합의한 경제적 및 기술적 효용성, 그리고 (3) 당사자의 법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상태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지역의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투자허가서는 투자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투자허가서 발행을 위한 등록절차 (registration for issuance of investment licences)와 투자허가서 발행을 위한 평가절차 (evaluation for issuance of investment licences), 즉 두 가지 절차에 따라 발행된다.⁴⁵⁾ 등록절차가 적용되는 사업은 (1) 시행령 제114조에 명시된 Group A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⁴⁶⁾ (2) 승인계획을 준수할 것, (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생산품의 전량 수출; (b) 산업특구(industrial zone)에 투자하여 계획투자부가 정한 수출율을 충족하는 경우; (c)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본과

45) 2000시행령 제104조.

46) Group A에 해당하는 사업의 허가는 수상이 결정한다.

(a)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산업특구, 수출조립특구, 첨단기술특구, 그리고 도시지역의 기관시설건설; BOT, BTO 그리고 BT 사업
- 항구와 공항의 건설 및 운영; 해운과 항공운송 사업;
- 석유와 가스 사업;
- 우편 및 통신 사업;
- 문화, 출판, 인쇄; 라디오 및 TV통신사업; 의료검사 및 치료 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과학연구소 및 치료약품 개발사업;
- 보험, 금융, 회계 및 감사;
- 회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 매매용 주택건설;
- 국가방위 및 안보 사업;

(b) 투자자본이 4000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광산, 약금, 시멘트, 기계제조, 화학제품, 호텔, 임대용 아파트건설, 관광-락 지역 건설.

(c) 5 헥타로 이상의 도시지역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50 헥타로 이상의 기타 지역을 이용하는 사업.

2000시행령 제114조 제1항.

80%이상의 수출제조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허가기관은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⁴⁷⁾ 등록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사업은 모두 평가절차가 적용되는 사업이다.

등록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투자허가등록신청서, 합작기업의 경우는 계약서와 정관, 외국인단독기업의 경우는 정관, 경영협력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그리고 법인설립여부와 재정상태를 입증하는 서류이고 각각 5부씩 만들어 계획투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⁴⁸⁾ 투자허가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⁴⁹⁾

투자평가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록사업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 외에 기술적-경제적 설명서(technical-economic explanatory statements)와 기술이전서류(해당되는 경우)를 계획투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⁵⁰⁾

투자평가사업이 Group A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관련 부서와 지방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위해 투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상에게 제출한다. 만약 부서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투자신청서를 수상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부서들간의 협의절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수상은 투자사업평가이사회(State Evaluation Council on Investment Projects)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계획투자부의 권한에 포함되는 Group B의 사업에 관해서는 계획투자부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허가여부를 결정한다.⁵¹⁾

투자평가사업의 신청 시, 계획투자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부서에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⁵²⁾ 관련부서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획투자부에 서면으

47) 2000시행령 제105조 제3항.

48) 2000시행령 제106조 제1-2항.

49) 2000시행령 제106조 제3항.

50) 2000시행령 제107조.

51) Group A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2000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투자허가결정이 지방인민위원회에 위임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Group B에 해당한다. 2000시행령 제114조.

52) 2000시행령 제109조.

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의견개진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⁵³⁾ Group A에 해당되는 투자신청의 경우, 계획투자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평가의견서를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은 계획투자부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투자부는 수장의 결정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⁵⁴⁾ Group B에 해당되는 투자신청의 경우, 계획투자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평가를 결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⁵⁵⁾ 위 기한 내에 투자허가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계획투자부는 투자신청자와 관련부서에 그 투자거절이유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계획투자부가 신청서류의 보완 및 보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 결정권한이 위임된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술경제관련 부서와 관련부서에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⁵⁶⁾ 관련부서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투자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평가를 완료하여 투자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투자서류의 보완요청이나 투자거절이유서 요건은 위와 같다.

투자허가결정은 인민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으나, 인민위원회에 위임된 사업은 Group A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수상이 정한 투자자본액을 보유하는 사업이어야 한다.⁵⁷⁾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그 투자자본액에 상관없이 투자허가결정이 인민위원회로 위임될 수 없다: 국가도로

53) Id.

54) 2000시행령 제109조 제3항.

55) 2000시행령 제109조 제3항. 위 기한상의 제한은 특자가의 신청서류 수정 및 첨가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56) 2000시행령 제110조.

57) 2000시행령 제115조.

나 철도의 건설사업, 시멘트, 야금, 전기, 설탕, 알콜, 맥주 그리고 담배
생산사업,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및 조립사업, 관광사업.⁵⁸⁾

3. 투자보호제도(Investment Guarantee Measures)

1987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금이나 자산은 수용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유화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⁵⁹⁾ 그리고 1993 시행령도 명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개인에게 운영상 그리고 세계상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베트남헌법 제23조는 공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appropri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투자법 제21조의 효력에 대한 우려를 남기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2000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20-122조에서 좀 더 명확하고 안정된 투자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2000시행령 제120조는 베트남정부가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협정과 본 시행령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협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1조는 베트남 법령의 변화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영협력기업 투자가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협력기업은 계속하여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특혜적 대우를 향유할 수 있거나 또는 영업목적의 변경, 세금감면 또는 면제, 손실에 대한 세계상의 보전 등을 통해 투자보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방인민위원회가 위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투자부와 재무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투자허가서가 발부된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좀 더 호의적인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신법에 따라 적용을 받고, 필요한 경우 수정된 투자허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58) 2000시행령 제115조.

59) 1987 외국인투자법 제1조 및 제21조.

60) 1993 시행령 제20조.

4. 지적재산권보호(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베트남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체약국이면서,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된 수 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⁶¹⁾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State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국가특허국(National Office on Patents)에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은 발명품(15년), 실용신안(6년), 의장(5년), 그리고 상표권(10년)이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관련법은 발명품이란 “현재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장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발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그 사용정도가 개발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특허소유자가 발명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타인과 합의에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발명품이 국가방위 및 안보, 국민의 건강 또는 기타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핵심적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을 부인할 권한을 가진다.⁶²⁾

5. 기술이전의 허가(Technology Transfer)

1988 외국인기술이전에관한규칙(Ordinance on Transfer of Foreign Technology)은 모든 라이센싱계약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승인신청은 해당 정부기관에 하여야 한다. 승인신청 시 기술이전 약정서 사본, 기술이전효용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그리고 이전계약 당사

61) 자세한 내용은 Wunker, *supra* note 9, at 373.

62) 지적재산권보호규칙 제14조.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승인은 기술이전증명서(Technology Transfer Certificate)의 발행으로 취득되는데, 그 효력은 7년이다. 외국인기술이전에관한규칙 제6조는 기술이전계약이 수록하여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⁶³⁾

이전된 기술의 수출제한은 금지된다. 외국인기술이전에관한규칙에 기술이전의 라이센싱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지만, 정부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첫째, 라이센스의 사용으로 사용권자의 기술, 효율성, 생산물품의 영역, 질 등의 수준향상, 둘째, 환경침해여부, 셋째, 이전기술의 국내인력 및 에너지 그리고 천연자원의 적절한 사용여부, 넷째, 직업상의 안전성 유해 등이다.⁶⁴⁾

외국인투자가가 기술이전을 통해 자본출자를 하는 경우, 그 액수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법정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⁶⁵⁾ 자본출자형식의 기술이전계약은 투자신청서류와 별도로 그러나 동시에 제출되어야하고, 과학기술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의 승인을 받으면, 투자허가기관이 서류를 심사,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양허여부를 결정한다.⁶⁶⁾

6.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송금제도(Remittance)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1996년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경영협력계약의 당사자는 투자자본과 수입을 모두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계은행 또는 베트남은행

63) (a) 기술이전의 목적 및 그 명세서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 (b) 가격, 로열티, 조건 및 지불방법; (c) 이전의 장소, 시간 및 절차; (d) 산업재산권의 명세; (e) 계약기간, 수정방법 및 종료시기; (f) 결과 기밀유지에 대한 담보; (g) 기술사용을 위한 교육방법; 그리고 분쟁해결방법.

외국의기술이전에관한규칙 제6조

64) Wunker, *supra* note 9, at 374.

65) 2000시행령 제81조 제2항.

66) 2000시행령 제81조 제3항.

또는 외국인 합작은행에 개설된 구좌에 예치되어야 하고, 이 구좌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0년 투자법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으면 해외 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⁶⁷⁾ 환전은 베트남중앙은행이 공시하는 환율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가가 세제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윤이나 용역 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소득, 대외채무의 원금 및 이자, 투자자본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⁶⁸⁾ 송금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은 투자의 성격이나 자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⁶⁹⁾ 산업특구나 수출조립지구 또는 첨단기술지구, 투자장려 선정지역 내의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의 투자,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이윤의 3%가 해외송금세로 부과되고, 법정자본금 또는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해 500-1000만불 이하로 투자한 경우에는 이윤의 5%가, 그 외의 경우에는 7%의 세금이 부과된다.⁷⁰⁾

사업이 종료(termination of operation)되거나 회사가 청산(dissolution)되는 때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은 송금이 가능하지만 송금액이 초기 투자자본이나 재투자자본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분의 송금에 대해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⁷¹⁾

7. 세제와 특혜(Tax and Preferential Treatment)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의 외국인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수익금의 25%를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로 지불하여야 한다.⁷²⁾ 그러나 (a) 산업특구지역의 서비스분야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20%;⁷³⁾ (b) 투

67) 2000외국인투자법 제35조.

68) 2000외국인투자법 제22조.

69) 2000외국인투자법 제43조; 2000시행령 제50조.

70) 2000시행령 제50조 제2항.

71) 2000시행령 제68조 제2-3항.

72) 2000시행령 제45조.

73) 또한 위 사업은 영업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자장려사업,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특구 지역(export processing zones)의 서비스기업, 또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산업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15%;⁷⁴⁾ (c) 위 (b)항의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업, 특별투자장려사업에의 투자, 투자장려 지역 중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산업특구나 수출특구 또는 첨단기술특구의 간접시설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부과된다.⁷⁵⁾ 또한 특별투자장려사업에의 투자, 투자장려지역 중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산업특구나 수출특구 또는 첨단기술특구에 투자하거나 이 지역의 간접시설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투자수행기간동안 계속하여 적용되고, 그 외 10%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은 생산이나 사업시작일로부터 15년 동안, 15%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12년 동안, 20%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적용된다.⁷⁶⁾

베트남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외국인투자법에따라 현재 시행중인 또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가 2000시행령 제46조상의 투자장려지역에 행하여지고, 3년 이상 재투자자본으로 사용되며, 법정자본이나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자본이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완전히 투자되면, 재투자된 액수에 대해 이미 지불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급된다.⁷⁷⁾ 환급을 신청하는 재투자가는 필요한 서류

그 후 2년 동안은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2000시행령 제47조

- 74) 위 사업은 영업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 후 3년 동안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2000시행령 제47조
- 75) 2000시행령 제51조 제2-3항. 이에 해당하는 사업과 투자장려지역에 투자한 사업은 영업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동안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8년 동안 면세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후 4년 동안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2000시행령 제47조 제3항.
- 76) 2000시행령 제46조 제4항. 그러나 위의 특혜적 세율은 호텔, 사무소, 임대용 아파트사업분야(투자장려지역, 사업종료 시 무상공여되는 사업 제외)와 재정, 금융, 보험, 교역 및 서비스분야의 투자사업(산업특구, 수출특구 및 첨단기술특구 제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0시행령 제47조.
- 77) 2000시행령 제51조 제1항. 법인세율이 10%인 사업에 투자된 경우는 100%,

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8.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합작기업 당사자간의 분쟁, 경영협력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관 또는 개인과의 분쟁, 그리고 경영협력계약과 합작기업의 외국인당사자간의 분쟁은 우선 협상과 주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⁷⁸⁾ 합의에 실패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1) 베트남 법원, (2) 베트남중재기구 또는 외국중재기구 또는 국제중재기구, (3)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설립된 중재재판소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⁷⁹⁾ 그러나 외국투자기업간의 분쟁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베트남경제주체와의 분쟁은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중재기구나 베트남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⁸⁰⁾ 외국인투자가와 BOT, BTO 그리고 BT계약으로 설립된 국가단체간의 분쟁과 BOT 기업과 베트남 경제주체와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⁸¹⁾

V. 결 론

베트남은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을 통해 1990년대 중반까지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외국인투자액과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계획투자

15%인 사업의 경우에는 75%, 20%인 사업의 경우에는 50% 환급된다. 2000시행령 제51조 제2항

78) 2000시행령 제122조.

79) 2000시행령 제122조 제1항.

80) 2000시행령 제122조 제2항.

81) 2000시행령 제122조 제3항.

부와 지방인민위원회의 강제적 승인절차인데, 그 이유는 강제적인 승인 절차로 인해 베트남경제에 상당한 기여할 수 있는 투자프로젝트가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과 투자회망프로젝트가 베트남 사회주의당(Vietnamese Communist Party)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잠재성 때문에 투자가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 중 가장 까다로운 경영허가신청절차를 가지고 있다. 만약 베트남정부가 이러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투자신청절차를 폐지하였다면 외국인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1987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속기한이 20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권한은 어떤 기관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부여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결하고 있다.

논문주제검색키워드 : 베트남, 외국인투자, 경영협력계약,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건설경영양여계약, 계획투자부, 지방인민위원회

<Abstract>

A Study on 2000 Vietnam Law on Foreign
Investment

Park, Won Seog

The Vietnam, a poor communist country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made a turning-point decision in its development strategy by introducing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1987. Since the inception of this Law, the Vietnam has experienced drastic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over 2,400 projects worth more than US\$ 35 billion invested by hundreds of companies from over 7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so, it is notable that the share of FDI sector in Vietnamese economy expanded from 3.6% of Gross Domestic Products in 1993 to 10.5% in 1999 and currently accounts for nearly 30% of the total domestic investment, and 21% of export turnover.

However, FDI inflow to Vietnam has been recently decreasing partly due to the impact of 1997-1998 financial crisis in Asia and partly due to the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stringent conditions. To create more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the Vietnam government amended or supplemented its foreign investment-related laws in 1992, 1996, and finally 2000.

This Article focuses on analysing 2000 Vietnam Law on Foreign Investment(*hereinafter* 2000 Law) and its Implementation law-Government Decree Providing Detailed Regul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hereinafter* 2000 Decree).

2000 Law improved the conditions in 3 major groups of issues. First, it removed some obstacles to investment, and reduced risks for foreign investors by shifting responsibilities for compensation and land clearance from foreign parties to Vietnamese ones; allowed foreign investors to mortgage their landuse rights for loan.

Second, FDI enterprises has more autonomy in the Management Board; more easily changes the investment forms, reorganizes enterprise, and transfers invested capital and profits abroad.

Finally, Foreign investors are given more preferences such as expansion of import tariff-exempted materials, reduction of profit transmittance tax rates and corporate income tax, application of more favorable laws when changed, etc.